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 사례 조사 및 분석*

An Analysis of Reciprocal Borrowing Programs in the U.S.

정진수(Chung, Jin Soo)**

【초 록】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통합대출서비스를 소개하고 이 서비스가 일찍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 전체 차원 통합대출서비스의 도서관카드 제도로서 조지아 주의 PINES카드, 메릴랜드 주의 MPower카드, 미시간 주의 Michi카드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전형적인 미국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통합대출서비스 유형으로서 아틀란타 풀턴 카운티 공공도서관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인접지역 도서관간의 통합대출서비스 유형 사례로서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상호대출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통합대출서비스 유형의 사례들을 이미 Kwak et al.(2010)에서 제시된 통합대출서비스의 세 가지 모형과 맵핑을 시도하였으며 국내에서 통합대출서비스 도입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통합대출서비스, 상호대출, 협동대출, PINES 카드, MPower 카드, Michi카드, 미국

【Abstract】

As today's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s rapidl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users expect a variety of the library services that meet their emerging needs. This paper reports the concept of reciprocal borrowing and analyzes the cases of reciprocal borrowing programs in the US. Particularly, this paper

introduces (1) three cases of state-wide library cards such as Georgia's PINES card, Maryland's MPower card, and Michigan's Michi card. (2) Public library systems in the U.S. also are introduced as a type of reciprocal borrowing. Another type of reciprocal borrowing mentioned in this paper was (3) an mutual agreement between and among libraries. The author sought the deeper understanding of reciprocal borrowing by mapping the cases described in this paper into three models of reciprocal borrowing Kwak et al.(2010) suggested. This paper concludes with a few important considerations in implementing reciprocal borrowing services in Korea.

【Keywords】

Reciprocal Borrowing, Cooperative Borrowing, State Library Cards, PINES Card, MPower Card, Michi Card

1. 서론

진화론 학자인 찰스 다윈에 의하면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은 강한 종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종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도서관 서비스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정보환경이 급변하게 되어 이용자들은 더 이상 인터넷 이전의 인쇄시대 방식대로만 도서관과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 이전에 제공하였던 서비스만을 고집한다면 도서관도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되는 많은 생명체들과

* 본 논문은 2009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용역 과제인 '통합대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협력방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본 논문은 2010년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schung@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0년 5월 1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6월 25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도서관이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발맞추어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사회를 뒷받침하는 지적 하부구조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도서관이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개발한 서비스 가운데 통합대출서비스가 있다. 통합대출서비스란 “도서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타도서관에서 등록된 이용자에게 자관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자료를(직접)대출해 주는 서비스”이다(곽철완 외 2010). 다시 말해, 통합대출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이 주로 이용하고자 등록한 도서관이 아닌 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도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대출의 주체가 이용자 개인과 다수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도서관간의 대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와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대중화시절 이전부터 통합대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통합대출서비스 정책을 개발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계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통합대출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구적인 몇몇 지역에서 지역차원의 통합대출서비스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곽철완 외 2010). 아직 대다수의 국내 도서관들이 통합대출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통합대출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참고할 만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 배경

미국에서 통합대출서비스의 개념이 큰 무리 없이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도서관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도서관 이념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공익성 추구라는 본질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정보의 평등성을 구현하는 사회적 기관이란 책임감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대출서비스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단위의 재산체가 투자되는 지역공공도서관의 한계를 넘어서 이용자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자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관 정책에 반영한다. 통합대출서비스는 이러한 이념을 충실히 현실화하는 도서관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풀뿌리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자서비스가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역을 기반으로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여 통합대출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성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미국 각 주별로 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집단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현실적인 고려를 넘어서서 서비스 가치 기준 중심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은 통합대출서비스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서비스정책을 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3. 통합대출서비스의 사례 선정

통합대출서비스는 국내 도서관 용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영문명으로부터 번역된 용어가 아니다. 본 저자는 사례 조사를 위한 검색을 실시하면서 통합대출서비스에 해당하는 적절한 영문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여러 영문 단어의 검색과 연결검색을 시도한 결과, 통합대출서비스의 정확한 영문명은 찾을 수 없었으나 ‘상호대출(Reciprocal Borrowing)’ 또는 ‘협동대출(Cooperative Borrowing)’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도서관간의 협의에 의한 통합대출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서비스가 주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 확대된 경우에는 ‘주 도서관카드(State Library Card)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Reciprocal borrowing’, ‘Cooperative borrowing’, 그리고 ‘State library card’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구글검색을 시도한 결과 발견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세 가지 통합대출서비스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 차원에서 주도서관 카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 도서관 자료들을 통합접근 하도록 한 경우이다. 둘째,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통합도서관 카드를 발급하여 도서관 시스템 소속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체 도서관 시스템에 소장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의 서로 다른 공공도서관 시스템 이용자들의 통합도서관 대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소개한다. 이 경우는 타 지역의 이용자에게 통합도서관 카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도서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특히 주차원의 통합대출서비스 카드인 주도서관카드는 시행하는 주에 따라 서비스 구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차례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3.1 주 차원의 통합대출서비스

미국도서관협회(ALA 2005)가 미국 각 주(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도 및 미국령 북부 마리아나제도 포함)의 주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수율 100%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서로 다른 관종의 도서관을 포함하여 상호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8%는 상호대출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7%는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출만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는 주 차원의 통합도서관카드인 주도서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2005년까지 모두 12개 주로서 24%이며 1개의 주가 공공도서관만 참여하는 주도서관카드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머지 응답자의 75%는 주 도서관카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도서관통합대출서비스를 공식화된 서비스로 주도서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2개의 주 중에서 조지아, 메릴랜드, 미시간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주도서관카드 사례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조지아 주 도서관카드인 PINES로서 주 전체 공공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주 내 공공도서관의 목록과 대출시스템까지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PINES 카드 소지 이용자는 조지아 주내 어떤 PINES 참여 공공도서관들이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메릴랜드 주 도서관카드인 MPower 카드는 메릴랜드 전체 공공도서관들을 모두 이용가능하게 하는 주도서관카드로서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으

나 MPower카드를 발급한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 새로이 이용자등록을 하고 대출이 가능하다.

셋째, 미시간의 Michi카드는 미시간 주에 소개한 모든 관종을 망라한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도서관 카드이다. 이들 도서관은 PINES과 같은 통합시스템을 개발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용자 등록을 통하여 통합대출이 가능하다.

3.1.1 조지아 주의 PINES 카드

3.1.1.1 개요

주도서관카드의 선구자로서 조지아 주의 PINES(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 2009)가 있다. 선구자란 통합대출 서비스를 위한 통합 시스템개발의 선구자라는 의미와 주도서관카드프로그램의 선구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조지아 주의 공공도서관협의회 성격과 가지는 조지아 공공도서관 서비스(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s)의 주도 하에 시작된 PINES(Public Information Network for Electronic Services)는 조지아 주의 거주민이면 누구나 조지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PINES 카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PINES 카드는 조지아 거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인 계층이나 지리적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으로 추진된 조지아 주의 '장벽 없는 도서관' 운동의 결과물이며, 카운티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시스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소시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의 159개 카운티에 있는 285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조지아 PINES 카드 로고

3.1.1.2 도입배경

PINES는 초기에 도서관 자동화와 Y2K-compliant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에 시작되었다. Y2K-compliant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의 시스템들이 시급하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조지아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내린 결단이

1) 목록시스템, 대출반납시스템, 이용자정보시스템 등이 모두 통합되어 운영되는 시스템.

바로 하나의 통합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서관시스템을 교체해야하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을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기존 상업 시스템소프트웨어는 다수가 참여하는 통합시스템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Evergreen을 개발하였고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서관 이용자들이 조지아주 내 어느 도서관을 이용하여도 공통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정책과 협약에 합의하였으며, 동시에 어느 도서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도서관 카드 발급에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로부터 지역단위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 새로운 시도로써 공공도서관계의 주목을 받았다.

PINES의 운영은 참여도서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지아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매년 PINES 이용 데이터를 규합하여 공개함으로써 서비스의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를 점검하여 PINES의 효과성을 홍보한다.

3.1.1.3 PINES 참여

PINES 참여는 자발적이나 엄격하게 참여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도서관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PINES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에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며, 경고를 받은 도서관은 60일이 지나기 전에 위반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PINES 운영위원회는 해당 도서관에 PINES의 참여 중단을 요청한다.

3.1.1.4 PINES 카드 발급

조지아 주 거주민이면 누구나 PINES 도서관카드를 발급 받으며, 조지아 소재 학교를 다니는 경우, 조지아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무료로 PINES 카드를 발급 받는다. 현재 조지아 주 내에 위치하지만 PINES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이용자들까지도 원한다면 PINES 도서관카드를 발급받아 PINES 참여도서관 이용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PINES 참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카드에 기록된 이용자들의 도서관대출기록, 연체료 기록,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조지아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도서관장 또는 지명대상자의 승인을 통해 공개된다.

3.1.1.5 목록정책

PINES 참여 도서관들은 목록정보를 공유한다. PINES 목록정보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자료에 대한 소장정보이다. 서지정보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이 포함되며, 개별 자료에 대한 정보는 지역도서관의 장서관리를 위한 정보로서 청구기호와 복본정보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자료의 서지정보는 단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서지정보는 모든 PINES 참여 도서관들이 공유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서지정보에 대한 편집은 PINES 목록기술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개별 자료에 대한 소장정보는 지역도서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려 처리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은 서지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개별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여기서 소유권의 의미는 그 정보의 편집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며, 각 도서관에서 개별 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PINES는 목록 정보 중에서도 서지정보를 소유하고 이를 참여 도서관들과 공유한다.

목록정보의 입력은 PINES의 규정대로 PINES 목록 훈련을 마친 목록사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PINES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OCLC의 목록정보의 두 가지 소스로부터 목록 정보를 복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PINES의 목록 규정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PINES는 개개의 도서관에서 목록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하며 모든 목록작업은 지역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중앙관에서 하도록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계획된 훈련일정에 목록사서를 참여시켜 PINES의 공인 목록사서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회원 도서관의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1.1.6 대출과 반납

PINES 참여 도서관간의 대출은 상호대차와는 다르다. PINES 카드 소지자는 다른 지역의 PINES 참여 도서관의 장서를 그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같은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구분에 따라 대출 권수와 대출예약할 수 있는 권수의 차이는 있다. 이용자 구분은 연체료 기록, 이용자의 법적 신분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해당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신용정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쇄본자료의 대출은 자유로우나 오디오북, CD, DVD, 베스트셀러, 장비, 마이크로폼 자료, 신간도서, 참고도서, 지정도서, 소프트웨어 등은 예외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이용자가 최초로 등록한 도서관에서만 대출가능하다. 대출된 인쇄본 자료의 반납은 PINES 참여 도서관 어디라도 가능하다.

3.1.2 메릴랜드 주의 MPower 카드

3.1.2.1 개요

MPower 카드(Maryland Association of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2008)는 메릴랜드 주민들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과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주도서관 카드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MPower 카드 이용자는 메릴랜드 주 전체의 174개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MPower 카드는 연방정부의 도서관 관련 재원인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LSTA)의 기금과 메릴랜드 공공도서관, 메릴랜드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의 공동 지원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MPower 카드제작과 필수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정부 내 메릴랜드 공공도서관 경영자협회가 기획과 운영, 그리고 MPower 카드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훈련을 담당한다.



〈그림 2〉 메릴랜드 MPower 카드 로고

3.1.2.2 도입배경

메릴랜드 공공도서관은 메릴랜드 거주민들이 모든 메릴랜드 공공도서관에서 공통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출서비스를 경험하고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자 전 주차원에서 도입하였다. 메릴랜드의 전체 공공도서관은 MPower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어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메릴랜드 거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MPower카드가 2005년에 도입되었을 무렵에는 도서관 전산화가 이미 되어져 있고 각각 공공도서관들이 서로 다

른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는 개별 도서관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통합대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1.2.3 MPower 카드의 발급

MPower 카드 발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우선 자신의 지역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에 지역 도서관 카드와 함께 MPower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MPower 카드에 포함되는 정보는 이름, 등록도서관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 벌금액(\$50 이상은 대출금지), 이메일주소, 이용자 구분이다. 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활용하여 한 면에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로고와 디자인, 그리고 다른 면에는 MPower카드 로고와 디자인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3.1.2.4 대출과 반납

메릴랜드 주민들은 MPower 카드를 사용하여 메릴랜드 주 내 어느 도서관에서나 자료를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 내의 각각의 공공도서관 시스템들은 도서관마다 독립된 대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용하고자하는 도서관 마다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MPower 카드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방문한 도서관에 등록을 하면 해당 이용자가 MPower 카드를 발급받았던 도서관으로부터 가져오게 된다. 도서관들간의 이용자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메릴랜드 공공도서관과 메릴랜드 교육부는 LSTA를 이용하여 전 공공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이용자는 이용하는 도서관의 대출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출자료의 반납은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반납 자료가 소장 도서관에 도착하여 처리될 때까지 반납으로 처리되어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해당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체료를 포함한 각종 벌금은 도서관 자료의 소장 도서관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미시간 주의 Michi 카드

3.1.3.1 개요

미시간 주민들의 도서관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미시간 주는 모든 관공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Michi 카드(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

2010)라는 주도서관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chi 카드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공공도서관들만 참여하였고, 1994년에는 대학도서관들이 참여하고 2000년부터는 모든 관중의 도서관들이 참여하도록 확대되었다. Michi 카드 프로그램을 위해 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용처를 (1) Michi 카드를 홍보하는 정보 자료제작, (2) 분실도서의 대체자료 구입, (3) 대출 자료의 반납 우편료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운영주체인 미시간 주 교육부 산하 미시간 주립 도서관(The Library of Michigan)은 여기에 더하여 (1) Michi 카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2) Michi 카드 스티커, 포스터, 플라이어,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 인쇄자료를 포함한 정보자료와 홍보자료 제작, (3) Michi 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리스트의 정기적 작성과 배포, (4) 필요한 모든 신청서, 합의서, 통계자료 양식, 환급요청양식, 그리고 절차적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과 제공, (5) 연간 평가, Michi 카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보의 준비와 배포, (6) Michi 카드를 이용한 모든 대출을 보장한다. 2009년 5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251개의 공공도서관, 210개의 지역 분관도서관, 그리고 59개의 대학도서관이 Michi카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3.1.3.2 도입배경

주 차원의 도서관카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은 주거주민들에게 정보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이용자들은 확장된 장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Michi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미시간 도서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주 거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자 Michi카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Michi카드 도입시 미시간주립도서관은 도서관들이 몇 가지를 명확하게 숙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Michi 카드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지역서비스를 줄이거나 개선시키는데 이용될 수 없으며 참여하는 모든 도서관은 각각 도서관이 원래 수행하던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장서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참여도서관은 Michi 카드 프로그램 평가와 감독을 위한 모든 기록과 통계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매년 Michi 카드 활동과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3.1.3.3 참여

모든 관중 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도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인 이상의 유급 도서관 직원이 있을 것
- 정기적 도서관 서비스 스케줄이 있을 것
- 도서관 목적에 맞는 시설이용이 있을 것
-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3.1.3.4 Michi 카드 발급

Michi카드를 발급하는 등록 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음의 정보를 기록한다: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또는 지역도서관 정책에 따른다. 보호자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또는 지역 도서관 정책에 따른다). Michi 카드 발급을 위한 도서관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초 Michi 카드 발급을 신청한 도서관 카드에 Michi카드 스티커를 부착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1.3.5 대출과 반납

Michi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Michi카드를 제시하고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료 대출 시에는 도서 대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해당 도서관들의 대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쇄본 자료의 대출은 보장되지만 시청각자료 등 다른 유형의 자료 대출에 있어서 이용하는 해당도서관의 정책을 따라야한다.

자료의 반납은 대출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Michi카드 참여 도서관에 할 수 있으며 반납을 받은 도서관은 대출도서관으로 우송하는 우편료를 미시간 주립 도서관으로부터 환급받는다. 또한 분실도서에 대한 환급 요청 시에 미시간 주 도서관개인정보법에 의해 이용자개인정보를 배제하고 Michi카드 등록도서관명을 기재하여 요청하며 분실도서의 환급은 자료당 \$200를 상한선으로 한다.

3.2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통합대출서비스: 이틀란타 폴톤 공공도서관 시스템

일반적인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하나의 중앙관과 여러 개의 분관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에 위치한 아틀란타 시와 인접한 폴톤 카운티는 공공도서관

관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를 '아틀란타 풀톤 카운티 공공도서관 시스템(Atlanta-Fulton County Public Library, n. d.)'이라 부른다. 이 시스템에 속한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들을 모두 포함하여 34개관이다.

이용자들은 거주 지역을 서비스하는 분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고 시스템 통합도서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 도서관카드를 이용하여 동일 시스템 내 34개 도서관을 마치 한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시스템 전체 도서관에서 통합된 목록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소장처를 확인하며 자유롭게 중앙관 또는 모든 분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이용과정에서 시스템 소속 전체 도서관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책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목록시스템, 대출반납시스템, 그리고 이용자 정보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의 조직, 유지, 관리는 해당 분관이 아닌 도서관 시스템의 중앙관에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한다.

3.3 인접지역 도서관시스템의 통합대출서비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상호대출

행정구역은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나 거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접 지역의 경우는 이용자의 통합대출서비스(상호대출) 요구가 클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각각 다른 도서관 시스템간에 협약을 통해 서로 서로 타관 이용자들을 자관의 이용자와 같은 대출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통합대출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북부는 미국의 수도 중심으로 형성된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서 일일 생활권의 인접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시스템들은 각각 인접한 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과 상호대출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각 도서관 시스템 이용자들이 협약을 맺은 도서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 공공도서관시스템(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System, n. d.)은 원칙적으로 워싱턴 DC 거주민, 직장인, 학생,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이용자등록을 허용하여 도서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 자료 통합 접근의 개념을 적용하여 메릴랜드 소재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조지 카운티,

워싱턴 DC, 북부 버지니아 소재 페어팩스 카운티, 로덴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펄스처치 시와 알렉산드리아 시 거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도서관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을 확인한 후에 워싱턴 DC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상호대출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이 개별도서관의 목록, 대출반납, 그리고 이용자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공통적으로 도서관카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호대출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각자 주거지 등록도서관카드를 소지하고 협의에 참여한 도서관에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대출권리를 보장받는다.

4. 토론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통합대출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는 상호대출 또는 협동대출의 개념으로 시작되어 통합도서관카드인 주 도서관카드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통합대출서비스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첫째, 주차원의 통합대출서비스인 주도서관카드, 둘째, 공공시스템의 통합대출서비스인 시스템통합도서관카드, 그리고 셋째, 인접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시스템들간의 상호대출협약에 의한 통합대출서비스이다. 이 가운데 주도서관카드의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을 보이는 세 가지 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조사된 사례들을 광철완 외(2010)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의 세 가지 모형에 맵핑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먼저, 주도서관카드인 PINES카드와 미국의 전형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인 아틀란타 풀톤 카운티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통합도서관카드는 전체 참여도서관들이 목록시스템과 대출반납을 위한 이용자정보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광철완 외(2010)가 제시한 통합대출서비스의 '통합시스템형'에 해당된다. 통합시스템형의 통합대출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은 서로의 도서관들을 마치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운영을 담당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도 통합대출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도서관카드 제도인 미시간의 Michi 카드와 메릴랜드의 MPower 카드의 경우는 콕철완 외(2010)가 제시한 모형 중 '분산형'에 해당된다. 분산형의 통합대출서비스는 서로 다른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목록시스템과 이용자정보시스템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과 대출반납을 위한 방안을 해결해야 한다. 미시간과 메릴랜드 역시 주도서관카드를 도입하여 전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개발 사용되고 있는 개별도서관의 목록시스템과 이용자정보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서관카드의 이용자 정보가 주도서관카드를 발급받은 등록 도서관으로부터 새로 이용자 등록한 도서관으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참여도서관들이 각각 시스템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목록시스템의 경우에는 통합목록형태로 공유하지 않고 개별도서관은 각각 목록시스템을 유지하여 이용자는 개별 도서관 목록시스템을 검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의 상호대출의 사례인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상호대출프로그램은 콕철완 외(2010)의 '상호협약형'에 해당된다. 따로 통합도서관카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동일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의 도서관이용을 장려하고자 인접지역의 공공도서관 시스템들이 서로 협약을 하여 협약 네트워크 내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관의 이용자와 같은 대출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통합대출서비스는 목록시스템 뿐만 아니라 대출반납을 위한 이용자정보시스템도 개별도서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통합대출서비스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면서 미국의 도서관들은 통합대출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 도서관 서비스인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출서비스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현대사회의 이용자들은 과거의 이용자들에 비하여 이용자 자신의 자유로운 검색과 대출반납을 선호하고, 또한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다르므로 도서관이 이용자 행태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확대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어 정보접근의 평등성을 구현하는 진일보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국내에서 통합대출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소개된 미국 사례들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새로운 서비스 시행 의지와 리더쉽, 예산지원, 관련 규정정비가 그것이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고자하는 의지는 기본이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서비스 기획과 시행의 과정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와 시행의지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대출서비스 소요비용에 따른 효과를 주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도서관은 사회적 가치재로서의 도서관서비스를 고민해야한다. 미국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을 사회적 가치재로 판단하고 현대사회의 이용자들에게 통합대출서비스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의 장벽이 없는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합대출서비스는 그 어떤 서비스를 대신하여 시행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필요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용자들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립도서관은 참여도서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에 통합대출서비스의 참여가 기존의 도서관서비스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이를 설명한다.

둘째, 서비스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주도서관카드 사례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정부 하의 주립도서관, 교육부, 그리고 공공도서관운영협의회 등이 각각 또는 연합으로 주도서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처할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시행계획을 세워 시행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도입을 위한 사서훈련,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통합대출서비스 관련 통계 조사, 그리고 예산확보의 노력 등을 기울였다.

셋째, 통합대출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 예산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분명 비현실적이며 일회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선 도서관들이 통합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발생할만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정부, 연방정부의 도서관 관련 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Michi카드와 MPower 카드는 좋은 예이다.

넷째, 관련 도서관정책과 관련 법조항 또는 규정을 정

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통합대출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될 만한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 법조항,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방법과 법적 장치, 참여도서관 준수 사항, 서비스 지속과 효과성을 위한 운영주체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정책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법조항의 정비는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나 꼭 시행 전에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MPower카드의 이용자개인정보 공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MPower카드 발급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이기에 MPower카드 시행 전에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상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통합대출서비스 사례들을 통하여 미국은 각 지역마다, 각 주마다, 현실에 맞는 통합대출서비스의 방식을 고민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통합대출서비스가 지역단위로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곽철완 외 2010), 미국의 상호대출 또는 협동 대출의 개념이 도입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의 통합대출서비스가 확산된다면 미국의 주도서관카드 제도와 같이 지역단위의 통합대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묶는 작업이 가능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사례를 통해 책임성 있는 정부기관이 리더쉽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정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통합대출서비스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조사 분석된 주도서관카드 제도의 사례들이 국내에 적용할 창의적인 방식 고안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곽철완, 김선애, 정은경, 정진수. 2010. 공공도서관의 통합 대출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61-17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5. States report high level of reciprocal borrowing arrangements. [cited 2010.5.16]. <<http://www.lita.org/ala/research/librarystats/cooperatives/recipborsur.cfm>>.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System.(n. d.). Getting your library card. [cited 2010.5.16]. <<http://www.dclibrary.org/dcpl/cwp/view.asp?a=1268&q=564469>>.

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 2009. PINES: Georgia's statewide library card. [cited 2010.5.16]. <http://www.georgialibraries.org/lib/pines/pine_sdatasheet.pdf>.

Maryland Association of Public Library Administrators, 2008. Maryland statewide library card. [2010.5.16]. <<http://www.maplaonline.org/statecard/default.asp>>.

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Michi Card. [cited 2010.5.16]. <http://www.michigan.gov/mde/0,1607,7-140-54504_18668_33419---,00.html>.

